

수원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686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6863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5. 21 선고 2019가단64882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지 담당변호사 강구현

변론종결 2021. 10. 13.

판결선고 2021. 11. 2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5. 21. 선고 2019가단6488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9.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8. 26. 접수 제117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 2)항(제3쪽 제2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장

①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속한 G씨 문중의 선산으로서, 피고의 증조부 망 H이 1987. 5. 3.

사망함에 따라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의 주재자인 H의 장자이자 피고의 조부인 I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I이 상속등기 없이 2002년 무렵 사망한 후, I의 장자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F는 신용불량자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3. 8. 8. F의 동생이자 피고의 작은아버지인 D와, H의 차남인 망 J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F가 D와

J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채무자 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F와 피고는 D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증여받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04683호로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8. 20.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D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21. 9.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재산상태, D와 F 및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던 가압류와 압류 및 강제경매 내역,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 주식회사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L로 신청한 강제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D의 채무를 대납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D, J 앞으로 2013. 8. 8. 마쳐진 등기원인은 H의 사망날짜인 '1987. 5.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어 H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D와 J이 상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4,959㎡에 달함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이 G씨 문중의 선산이라면서 증거로 제출한 묘지 사진(을 제5호증)의 영상에는 비석 기타 석물이 전혀 갖춰진 바 없이 봉분의 형상마저 제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한 분묘 1기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F가 D와 J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기창, 판사 이지형, 판사 최호열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강원도 속초시 임야 4959㎡
(소유 지분 2분의 1 전부)

끝.

